

## UR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

포 럼

### 3. 철강 산업

일 시:	1994년 1월 19일 오후 2-4시
장 소:	본원 회의실
사 회:	전달영 박사(현대경제사회연구원)
참석자:	강구영 박사(RIST 경영경제연구소) 곽만순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송원택 부장(인천제철)
정 리:	오성중 수석연구원(현대경제사회연구원)

**사회자:** UR이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내용은 첫째,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UR 협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UR과 관련하여 주요 경쟁국들의 철강 산업 변화 전망은 어떠할 것이며, 셋째, UR 타결이 우리의 수출입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곽박사께서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UR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철강 산업에 영향 미칠 주요 협정 내용

**곽 박사:** UR 협정 중에서 철강분야는 MSA (Multilateral Steel Agreement) 협상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째로 합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세무세화에서는 10년 이내에 무세화한다고 하는 MSA 합의가 그대로 수용되므로써 일단 관세분야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현행 관세의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2005년부터 완전 무세화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입니다. MSA는 설비 폐쇄 보조금, 환경 보조금, 실업 보조금, 연구 개발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UR 협정에서는 연구 보조금과 지역 개발 보조금, 환경 보조금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허용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여부에 관해 국가간에 입장이 다릅니다. EC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상계 관세 부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허용 보조금이라도 철강 교역을 왜곡할 시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번째로 반덤핑 제도에 관해서도 MSA에서 국가별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 본고는 1월 하순 본 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지난 호(기계 산업, 석유화학 산업)에 이어 이번 호에 연속 게재함.